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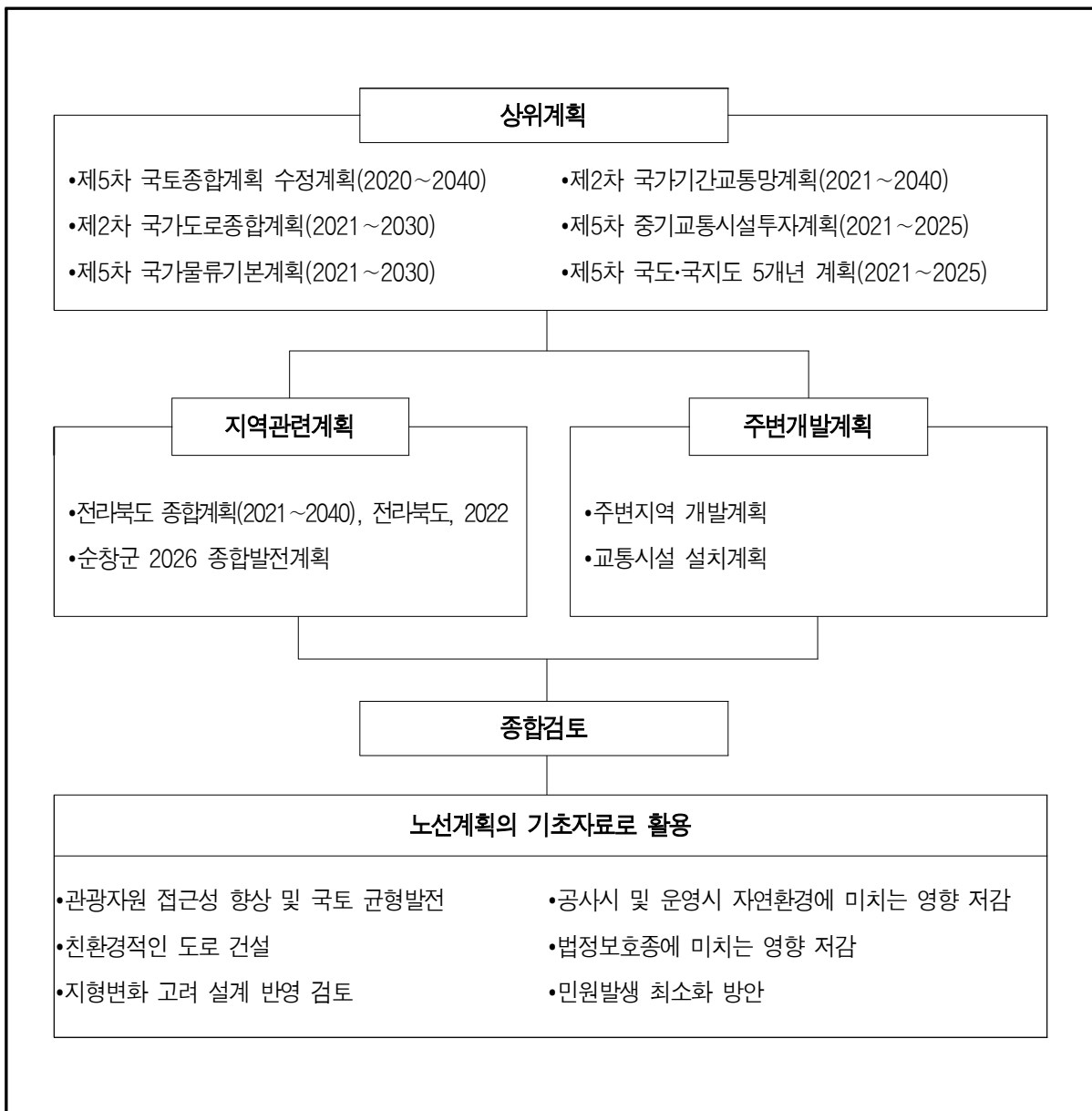


국토관리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추진근거

본 계획은 2021년 8월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안(전라북도 지역) 일괄 예비타당성조사(‘21~’25)」 및 2021년 9월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21~’25) 등에 수립 고시되어 추진된 계획이다.



[그림 1-1] 상위계획 및 계획추진근거

1.2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내장산~강천산~고추장마을~지리산을 연계하는 도로(시점부 지방도 729호선, 종점부 국도21호선)의 확장을 통해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여건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의해 개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다.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환경부, 2023.03.07.

1.3.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표 1.3-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표 1.3-2] 계 속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산정	· 총 연장 : 9.26 km · 신설구간 : 3,398m, 확장구간 : 3,404m · 신설 및 확장 이외 구간(2,458m)은 차로확장 등이 없으므로 평가대상 산정계산에서 제외함 신설 3.398 km 4.0 km + 확장 3.404 km 10.0 km = 1.1899 ∴ 환경영향평가 해당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환경부, 2023.03.07.

1.3.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표 1.3-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 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 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 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 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 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u>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u> <u>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u> <u>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u> <u>을 때에는</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u> <u>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 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 2016. 07 : 지방도 792호선 → 국지도 55호선 승격
 - 2020. 01.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최초 요구안
 - L=9.08km, 총사업비 863억원
 - 2021. 08.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전북지역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 L=9.08km, 총사업비 903억원
 - 2021. 09.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 수립 고시
-
- 2023. 02. 27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1.4.2 향후계획

- 2023. 05. : 평가준비서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 2023. 05. : 1차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 2023.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3. 08. : 2차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 2023. 08. : 기본설계 완료
- 2023.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내용

- 계획명 :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 계획수립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구림면 월정리
- 규 모 : L=9.26km
- 사 업 비 : 1,024.9억원

[표 1.5-1]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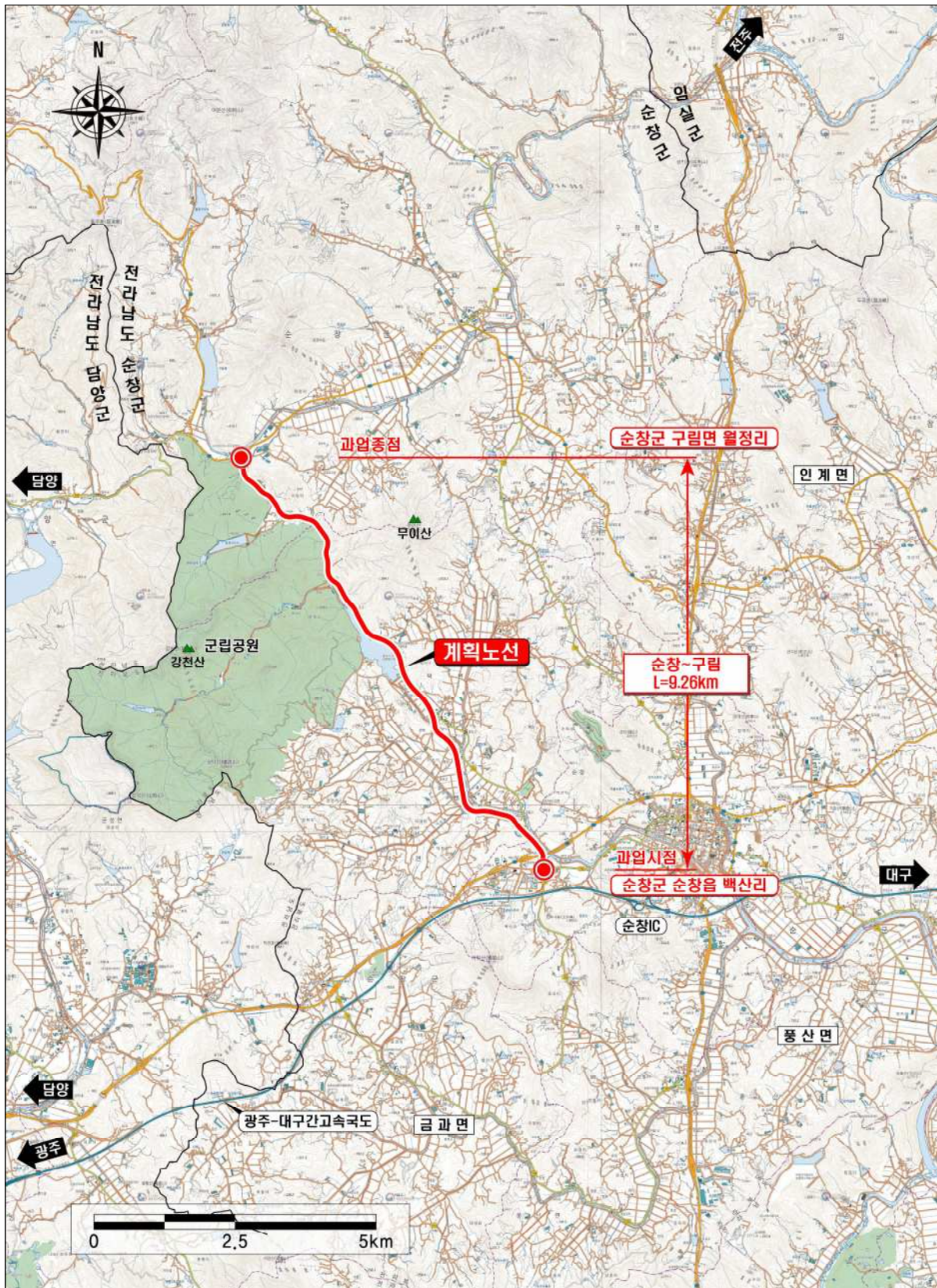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주요내용	총 연장	L=9.26km	-
	폭 원	B=10.0m ~ 17.5m	2차로 → 4차로 확장 2차로 시설개량
	교 량	6개소 / L=340m	-
	출입시설	11개소	-

1.5.2 설계기준

- 도로구분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 설계속도 : 60km/hr

1.6 기대효과

국도 24호선 및 국도 21호선을 연계하는 보조간선도로망 건설로 일부 신설과 국지도 55호선의 도로 확장 및 개량으로 강천산 등 방문객, 지역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림 1-2]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22-240호)」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생태면적률, 오염총량 기준 등 법률(행정규칙 포함) 등에서 설정된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목표치, 각종 환경보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 및 지표 등
-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 목표
- 정성적 목표 설정의 필요성도 적거나 없는 사업 또는 항목은 환경보전목표 설정 생략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도환경종합계획, 시·군·구환경종합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 제7조의2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도로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표 2-1] 주요 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계획

구 분			환경보전목표 설정		설정사유(설정기준)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 계획 등 주요 환경목표 및 지표와의 부합성 검토		· 국가환경종합계획, 전라북도 환경보 전계획, 분야별 환경계획상의 환경 목표·지표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도로계획 목표에 적합한 대안별 비교·검토 및 최적대안 선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지침 · 계획의 비교 및 입지 대안을 환경적 측면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 ·양호한 식생구간 (식생보전 I, II등급) 보전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 설정 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야생생물
		지형 및 생태축 보전		·보전가치 높은 지형·지질 유산, 특이 지형 보전	· 지형·지질 유산 및 특이지형 문헌자료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 심의기준 준수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경관 확보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지침」의 심의기준
		수환경의 보전		·국가 수질환경기준 유지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이내 배출여부 ·지하수위 저하 등 영향최소화	·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시된 수질 환경기준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시행계획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	· 도로건설에 따른 기상영향 경미
			대기질 (온실가스)	·국가, 지자체 대기환경기준 유지 ·탄소 흡수원 확보 등 통해 배출량 흡수 및 완화 처리 ·국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에 제시된 대기환경기준 ·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토 양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여부 -토양오염유발시설 입지시 선정	·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 유지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유지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도로) 준수 ·피해보상 등 고려한 기준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 소음진동관리기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연 계처리 등의 적정성	· 공사 및 운영시 오·폐수 등 처리
		자원·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국가지자체·사업자 자원순환 목표 ·자원순환 기본계획 및 지자체 자원 순환 시행계획 목표 달성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및 지 자체 시행계획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토지이용		·국토 및 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의 규제내용 고려 ·환경친화적 도로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제 ·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 규상 규제내용

제3장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평가대상범위를 설정하였다.

3.1.1 입지의 범위

- 사업명 :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구림면 월정리
- 규 모 : L=9.26km

3.1.2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 범위

주요 평가대상은 공사시 노선주변 동·식물상 영향,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운영시 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영향, 대기질 영향 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3.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본 계획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범위를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표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및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의 비교 및 입지 대안을 환경적 측면 비교·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표 3.2-1] 표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및 범위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지질 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폐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원 등에 의한 영향 •수질오염 총량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시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토 양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주변지역
			소음·진동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200m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연계처리 등의 적정처리 여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원· 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인구·주거		•인구·주거 변화 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3.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본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였다.

[표 3.3-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사업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최근 10년간
	대기질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수환경	수 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수리·수문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토 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200m	•공사시 및 운영시
	위락·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표 3.3-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기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노선과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500m 이내 지역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대기 환경	기 상	•사업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관측망 자료 분석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기질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1.1., 환경부」를 참고하여 도로사업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인 500m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 환경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 운영시 오·폐수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
	수리·수문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가 예상되는 수계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토 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폐유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지형·지질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운영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의해 주변 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어, 일반적인 장비 투입대수에 따른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고려하여 200m 이내 지역을 공사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위락·경관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2023.4.10., 환경부」에 따라 계획노선 중심으로부터 선적 개발사업의 조망점 선정 기준인 반경 500m 이내를 근경으로, 반경 1km 이내를 중경으로, 반경 2km 이내를 원경으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주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3.4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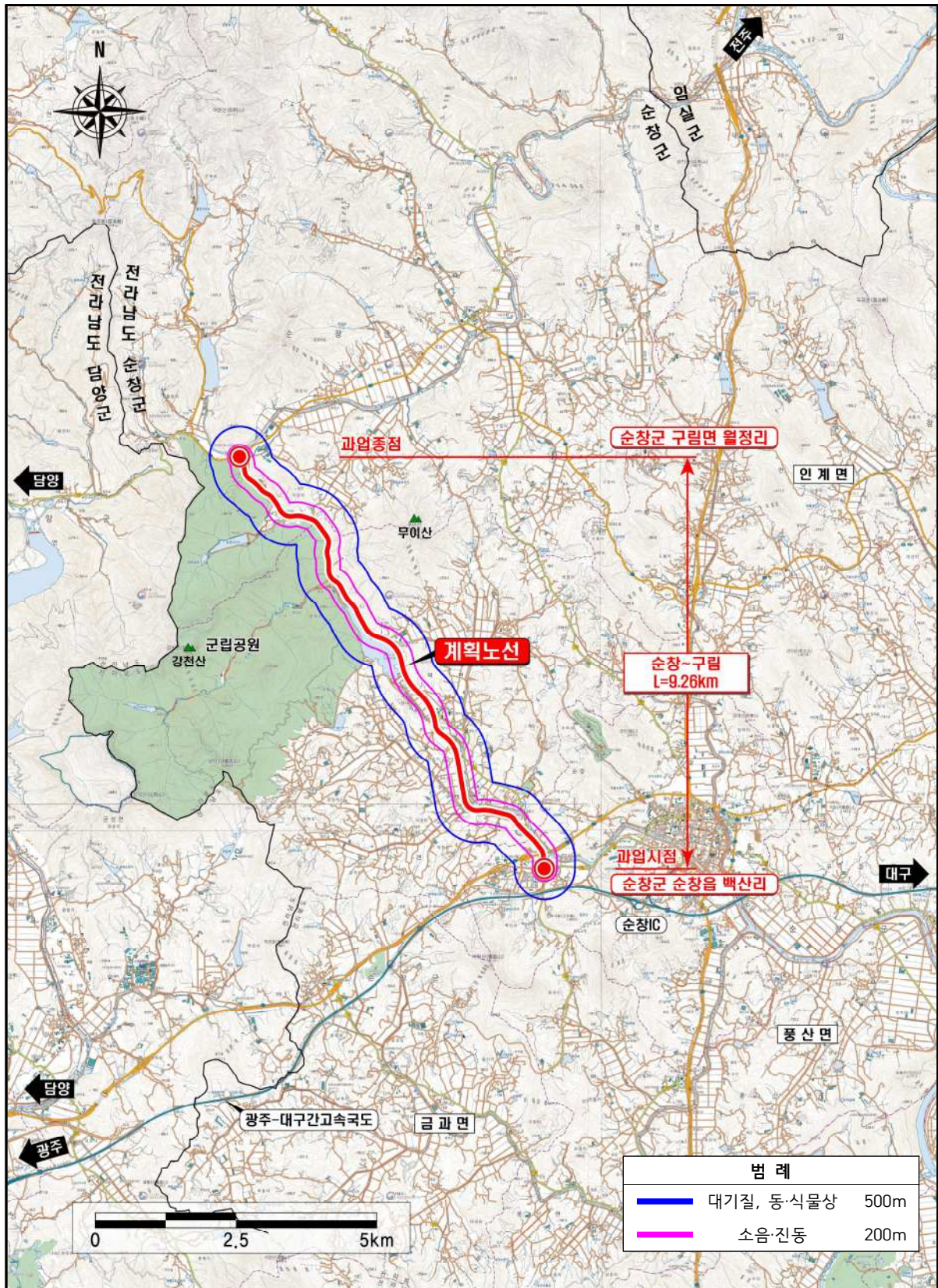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예측·분석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4-2] 환경영향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구 분 항 목		예 측 평 가 방 법	관 련 자 료
자연 생태 환경	동·식 물 상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한 동·식물 변화정도 분석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도 현황조사자료 •현지조사,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사업노선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현황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자연공원 지정현황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대 기 환 경	기 상	•사업노선 인근 기상대의 10년간 기상자료를 정리 하여 대기질 영향예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상연보(2013~2022)
	대 기 질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작업시 영향을 대기확산 식을 이용하여 예측 •운영시 증가된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파악 및 영향예측	•AREMOD, CALINE3 •건설공사표준품셈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온 실 가 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이용 변화를 예측	•기존자료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수 환 경	수 질	•공사중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현장사무소의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분석 •교량 설치로 인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운영시 배출부하량 산정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상·하수도 통계연보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수 리 · 수 문	•교량 건설에 따른 홍수위 등 수리·수문 변화 예측	•사업관련 사전재해영향검토서

[표 3.4-2] 표 계속

구 분 항 목		예 측 평 가 방 법	관 련 자 료
토 지 환 경	토 지 이 용	•관련계획 및 노선계획 검토 •환경관련 지구·지역 훼손여부	•통계연보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토 양	•토양 현황조사 자료 검토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공사장비 운용에 의한 토양 오염 발생유무 예측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지 형·지 질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구간 예측 •사업계획(평면도, 단면도 등) 분석 •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지형도 및 한국지질도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토질조사보고서
생 활 환 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처리대책 수립	•통계연보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소 음·진 동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거리 감쇠식으로 예측 •교량 기초 공사(항타)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운영시 유발교통량 등에 따른 소음영향을 교통소음 예측식(도로교통소음1, 국립환경과학연구원, 1999) 등을 이용하여 예측	•건설기계류의 소음특성 •운영시 교통량 예측자료
	위 락·경 관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위락 요소 변화 및 경관상의 저해요인 분석	•현지조사결과 •통계연보 •주변지형분석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사회 · 경제 환경	인 구·주 거	•기존자료를 통한 인구·주거 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측	•통계연보 •사업관련 실시설계보고서



[그림 3-1] 대상지역 설정도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4.1.1 관련규정 검토

본 계획시행에 따른 대안 및 검토항목 등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1, 환경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4.1.2 대안의 종류 및 선정과정에 관한 사항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 다음 표의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계획노선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22-240호」에 따라 설정하였다.

- 도로계획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계획비교(No Action 포함)’와 계획노선 선형 및 차량기지 위치 등을 고려한 ‘입지’에 대하여 대안을 선정하여 제시함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수단 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

4.1.3 대안의 설정

가. 대안설정의 기본방향

본 계획의 대안설정은 상기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계획의 특성 및 대안의 선정 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계획의 경우 대안 선정방법 중 “계획 비교” 및 “입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계획비교 :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1)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대안2)로 구분하여 설정
- 입지 : 대안별 노선검토(3개 구간) 입지검토 비교안 설정

나. 대안설정

설정된 대안은 계획 비교, 입지에 관하여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다.

[표 4.1-2] 대안의 개요

구 분		대안의 개요	
계획 비교		• 비교 1안	•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
		• 비교 2안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입지	대안별 노선 검토	• 비교 1안	• 입석, 신평마을 우회 통과로 가로수길(메타세콰이어) 보존 • 연장 : L=9.26km • 폭원 : B=17.5~10.0m - 시점 ~ 강천사 입구 : B=17.5m(4차로) - 강천사 입구 ~ 종점 : B=10.0m(2차로)
		• 비교 2안	• 기존도로 확장에 따른 가로수길(메타세콰이어) 저축 • 연장 : L=9.08km • 폭원 : B=17.5m (4차로)
		• 비교 3안	• 입석, 신평마을 우회 통과로 가로수길(메타세콰이어) 보존 • 연장 : L=9.40km • 폭원 : B=17.5~10.0m - 시점 ~ 강천사 입구 : B=17.5m(4차로) - 강천사 입구 ~ 종점 : B=10.0m(2차로)

4.2 대안의 검토

4.2.1 계획 비교

본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해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1] 계획 비교

구 분	비교 1안(Action)	비교 2안(No action)
개 요	• 계획을 수립할 경우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내 용	• 내장산~강천산~고추장마을~지리산을 연계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을 통해 방문객,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해소	• 현재 지역교통 현황 유지
장 점	• 교통체계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 도로교통 혼잡도 개선(이용편의성 향상) •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대기환경 개선	• 전반적인 환경영향 유지 • 자연환경 훼손 없음
단 점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다소 발생	• 현 상태는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간 접근성 및 교통체증 악화우려 •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퇴보
검 토 결 과	•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교통개선에 기여 및 도시경쟁력 향상(교통체계 확충), 도로교통 혼잡도 개선(이용편의성 향상),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일부 환경영향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걱정 저감대책 수립·이행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4.2.2 입지 비교(대안별 노선 검토)

본 계획노선의 선형을 입지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비교 1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2] 대안별 노선 검토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개 요	•입석, 신평마을 우회 통과로 가로수길(메타세콰이어) 보존	•기존도로 확장에 따른 가로수길(메타세콰이어) 저축	•입석, 신평마을 우회 통과로 가로수길(메타세콰이어) 보존
연 장	•L=9.26km (폭원 B=17.5~10.0m)	•L=9.08km (폭원 B=17.5m)	•L=9.40km (폭원 B=17.5~10.0m)
주 요 시설물	•토공 -절토 : 35.1만㎡ -성토 : 22.2만㎡ -사토 : 13.5만㎡ •교량 : 6개소/L=340m •옹벽 : 20,302㎡	•토공 -절토 : 49.6만㎡ -성토 : 40.5만㎡ -사토 : 11.6만㎡ •교량 : 5개소/L=385m •옹벽 : 7,591㎡	•토공 -절토 : 38.8만㎡ -성토 : 25.0만㎡ -사토 : 13.7만㎡ •교량 : 7개소/L=420m •옹벽 : 20,641㎡
장·단점	•입석, 신평마을 우회 통과로 가로수길 저축 최소 → 경천 평행 통과구간 일부 메타세콰이어 저축 → 기존 가로수길 보전으로 지자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가능 •팔덕면 소재지 완전우회통과로 주민민원 및 소음 등 환경영향피해 최소 •농경지 통과로 농업진흥구역 저축 과다 •강천산입구와 3지 평면교차로 진·출입 용이 •강천사입구 이후 2차로계획으로 생태자연도1 등급 저축 배제	•기존도로 준용에 따른 가로수길 편측 확장 및 저축 통과 → 메타세콰이어 이설 과다로 집단민원 및 관원(순창군) 우려 → 가로수길 관광측면 활용 및 효과 미미로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 불리 •팔덕면 배면 통과시 단구간 작은 평면곡선 연속 적용 → 단구간에 연속적인 작은 평면곡선 적용으로 주행성 및 교통안전성 저하 •종점부 기존도로 준용에 따른 연속적인 작은 배향곡선 적용 → 단구간 S자형 작은 평면곡선 적용으로 사고 위험성 증대	•입석, 신평마을 우회 통과로 가로수길 저축 최소 → 경천 평행 통과구간 일부 메타세콰이어 저축 → 기존 가로수길 보전으로 지자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가능 •팔덕면 소재지 근접통과로 주민민원 및 소음 등 환경영향피해 예상 •농경지 통과로 농업진흥구역 저축 과다 •강천산입구와 3지 평면교차로 진·출입 용이 •강천사입구 이후 2차로계획으로 생태자연도1 등급 저축 배제
선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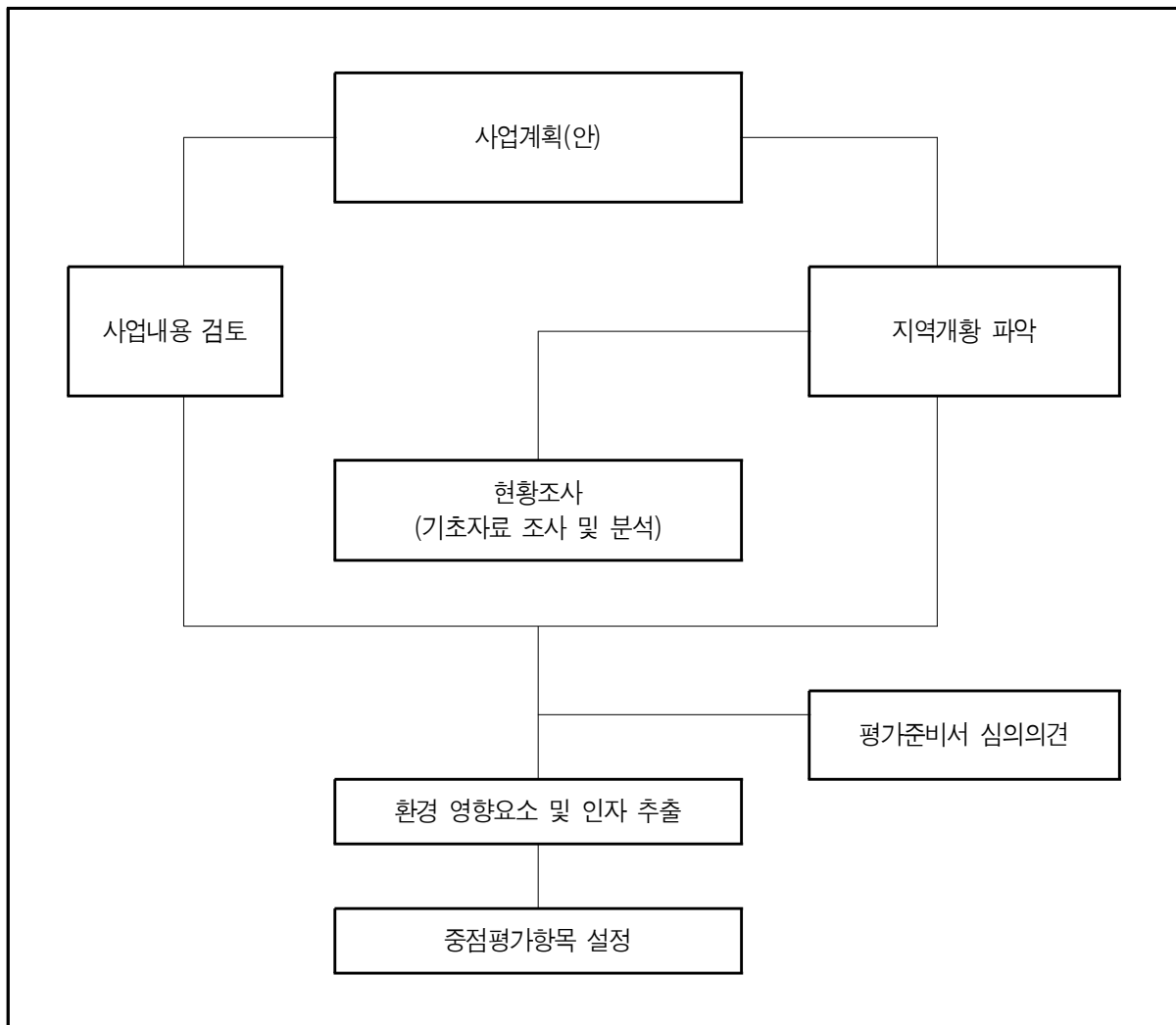
- 21 -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환경영향요소 추출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에 의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절차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향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그림 5-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5.2 전략환경영향평가

5.2.1 평가항목의 결정

본 계획의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 관련 [별표1]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본 계획특성 및 지역적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표 5.2-1] 평가항목 결정내용 및 선정사유

구 분			선정결과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중점항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중점항목	•계획의 비교 및 입지 대안을 환경적 측면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중점항목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중점항목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지질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항목	•계획시행(노선 폭, 도로신설)에 따른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중점항목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폐수 발생 •공사시 및 운영시 오·폐수발생 •수질오염 총량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일반항목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온실가스)	중점항목	•공사시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교통량 증가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토 양	중점항목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소음·진동	중점항목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항목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연계처리 등의 적정처리 여부
		자원· 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항목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토지이용		중점항목	•토지이용 변화 분석
		인구주거		일반항목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분석

5.2.2 평가범위 및 방법 결정

본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고, 각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5.2-2] 평가항목별 조사계획

구 분			조사계획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 조사내용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현황 •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기준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조사내용 : 주변 경관 및 경관자원 현황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수환경의 보전	• 조사내용 : 지표수질 현황, 오염원 현황 등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 조사내용 : 기상자료 •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분석
			•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기준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조사내용 : 토양 현황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200m 기준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자원· 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토지이용	
		인구주거	

[표 5.2-3] 평가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 분			예측 및 평가 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 영향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근경, 중경, 원경)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주변수계 현황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수질변화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예측 기초 자료 이용
			대기질 (온실가스)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영향 검토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토 양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토양오염 유발 요인 검토
			소음·진동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소음·진동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 활용 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토지이용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검토
		인구주거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검토

5.3 환경영향평가

5.3.1 평가항목의 결정

가.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중 평가항목을 토대로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상관관계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다.

[표 5.3-1]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는 작다.	●	악영향이 크다.

[표 5.3-2]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영향요소 환경인자			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기 환경분야			수 환경분야		토지 환경분야			생활 환경분야			사회· 경제 분야
			동· 식물상	자연 환경 자산	기상	대기질	온실 가스	수질	수리· 수문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인구· 주거
공 사 시	자연 형질 변경	지 형 변 화	▲	▲					▲	▲	▲	▲			▲	
		산 림 벌 채														
		사 면 발 생	▲	▲					▲			▲			▲	
		토 지 점 용	▲				▲			▲		▲			▲	
	토공 및 시설 물 공사	건설장비운영	▲			◆	▲		▲		▲			◆		
		토 사 이 동	▲			◆							▲			
		토공기초작업	▲			◆							▲	◆		
		건축물 공사														
		폐 기 물 발생									▲		▲			
		공사인부투입						▲			▲		▲			
운 영 시	도로 이용	배기가스 발생				◆	▲									
		도로소음 발생	▲											◆		
	지역 개발	주거환경변화								◎					△	●
		지역경제 변화								◎					◎	◎

나. 평가항목의 결정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1,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기상, 자연환경자산, 인구·주거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을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전파장해, 산업 등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3-3]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구 분		선정 결과			선정(제외) 사유
		중 점	일 반	제 외	
대기 환경	기 상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연료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교통량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됨
	악 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악취발생에 미치는 영향 미미
	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수 환경	수 질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주변 하천으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유입 발생이 예상됨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절차 이행
	수리·수문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하천의 홍수위 및 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함
	해양환경			○	•사업노선은 해양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표 5.3-3] 표 계속

구 분		선정 결과			선정(제외) 사유
		중점	일반	제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토 양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면 발생 등 지형변화가 예상됨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가 예상됨
	자연환경자산		○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여부 검토
생활 환경	친환경 자원순환	○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지장물 등 철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예측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 가동 등에 의한 소음 영향 및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진동 영향이 예상됨
	위락·경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위락 및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함
	위생·공중보건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전파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유발요인은 없음
	일조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가 예상됨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5.3.2 평가범위 및 방법 결정

본 사업의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표 5.3-4]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

구 분		조사계획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조사내용 : 육상 동·식물상 및 육수 동·식물상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환경자산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대기 환경	기 상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기상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분석
	대기질	•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온실가스	•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 현황파악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자료 조사
수 환경	수 질	•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현황 등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수리·수문	•조사내용 : 하천 및 유역현황, 대상유역의 특성, 기상·우량·수위관측소 현황 등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토지 환경	토지이용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토 양	•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지형·지질	•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등 특이지형·지질 분포 현황 등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소음·진동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시설 분포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200m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위락·경관	•조사내용 : 위락시설 분포현황, 경관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조사내용 : 인구·주거 현황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자료조사

[표 5.3-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 분		영향예측 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파악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대기 환경	기 상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공사시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 예측·평가(AERMOD 모델 이용), 운영시 교통량에 의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CALINE-3)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 환경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 합리식 이용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 원단위법 이용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예측 - 수질오염총량기술지침의 산정방법 이용 및 실시설계 보고서
	수리·수문	•사업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 문헌조사 및 실시설계 보고서
	토 양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지질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 문헌자료 및 본 계획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 원단위 이용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접음원 •운영시 교통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위락·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경관변화 예측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자료 등을 이용한 분석·예측 -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시뮬레이션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 변화 영향 예측

5.4 환경현황 조사계획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계획노선 주변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표 5.4-1] 환경현황 조사계획(안)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전략	환평
대기질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등 8개 항목	4개 지점	2회	2회
지표수질	•pH, BOD, COD, DO, SS, T-N, T-P, TOC,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등 21개 항목	4개 지점	2회	2회
지하수질	•pH, KMnO ₄ 소비량, 경도, 탁도, 색도, 증발잔류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6가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페놀, 황산이온, 망간, 불소, 아연, 철, 수은, 납, 시안, 비소 등 32개 항목			
토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등 17개 항목	4개 지점	2회	2회
소음·진동	•소음도, 진동도	4개 지점	2회	2회
동·식물상	육상 동·식물상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류)	계획노선 주변	2회	2회
	육수 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주) 평가준비서 심의의견에 따라 조사항목, 범위 등을 결정 할 예정임

[표 5.4-2] 환경현황 조사지점(안)

구 분	조사지점	주 소	TM좌표(m)	
			X	Y
대기질	A - 1	순창읍 백산리 320	210,623.1	307,966.2
	A - 2	팔덕면 용산리 298-2	208,780.6	310,515.2
	A - 3	팔덕면 청계리 805-2	207,456.3	311,617.6
	A - 4	구림면 화암리 1086	205,311.6	314,991.0
지표수질	W - 1	팔덕면 덕천리 580	209,716.7	309,046.7
	W - 2	팔덕면 산동리 720	208,641.8	310,459.1
	W - 3	팔덕면 청계리 산 194-1	206,837.5	313,521.0
	W - 4	구림면 화암리 1161-1	205,800.7	314,338.4
지하수질	GW - 1	팔덕면 덕천리 142-1	209,453.6	308,918.0
	GW - 2	팔덕면 용산리 340-1	208,658.5	310,680.2
	GW - 3	팔덕면 청계리 940	206,820.4	313,131.6
	GW - 4	구림면 화암리 1128-7	205,489.3	314,574.6
토양	S - 1	순창읍 백산리 249-2	210,456.7	308,251.6
	S - 2	팔덕면 덕천리 604-4	209,287.6	308,982.8
	S - 3	팔덕면 청계리 산 198-2	206,587.7	313,854.8
	S - 4	구림면 화암리 산 130	205,379.4	314,756.2
소음·진동	NV - 1	순창읍 백산리 314-11	210,589.9	307,998.6
	NV - 2	팔덕면 용산리 298-2	208,780.6	310,515.2
	NV - 3	팔덕면 청계리 839	207,778.5	311,953.6
	NV - 4	구림면 화암리 1086	205,311.6	314,991.0



제6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6.1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계획노선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표 6-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법적근거		본 계획 해당여부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6.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은 대상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본 사업노선은 약식평가 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사업노선 인근 환경적·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공원 등이 분포하므로 주민과 관계행정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식평가 절차는 신청하지 아니한다.

[표 6-2]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본 사업 해당여부	신청여부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 1 - 1.1899/1 = 약 119%	미신청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업임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7.1 전략환경영향평가

7.1.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또는 계획 수립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해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7.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공고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한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초안서 요약문을 게시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는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게시할 계획이다.
- 또한,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단, 공람장소는 향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이다.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내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계획수립기관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및 노선이 통과하는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설명회 개최 공고는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시 포함하여 공고,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7.1.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요청전에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순창군 정보통신망 등) 또는 계획수립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이다.

7.2 환경영향평가

7.2.1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포함하여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에는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는 생략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05.29., 2017.11.28.>

7.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는 제25조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7.1.1 심의방법 및 심의내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3.06.15. ~ 2023.06.30.
-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안의 종류,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등

7.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구성 : 총 8명(위원장 포함)
- 의견제출 위원 : 총 7명(위원장 제외)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주)바른	정○○	민간전문가 (자체선정)
	전북지방환경청	김○○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한국환경연구원	양 ○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순창군	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팔덕면민회	강○○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실천연합회	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위원별로 제출된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음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김○○)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본 평가준비서의 내용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 ○ 강천산 군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구간 인근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주)바른 (정○○)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입지의 특성 및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적절히 선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인근 주민 환경피해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 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이 자연공원인 강천산 군립공원을 인접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관심의 대상으로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등 경관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고 원경·중경·근경으로 구분하여 경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의 2차로 구간 중 오르막차로 설치 검토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으로 조사된 바,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환경(동식물상, 지형지질 등)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하천(경천 등) 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 제4장 지역개발에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세부현황에 사업지역과의 이격거리 제시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전북지방 환경청 (김○○)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군창군 구림면 월정리 연결도로(지방도 729호선~국도21호선 연계)를 신설·확장을 위한개발계획으로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을 바탕으로 개발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주변 환경현황,토지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저감방안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평가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목표·방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측정·분석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분야·항목별 세부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은 강천산 군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무이산)에 연접하여 지나는 노선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
		○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부지 주변(강천산 및 고추장마을 등)에서 계획 또는 공사·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을 검토하되, 지역 특성(강천산군립공원 경관 등)을 반영하여야 함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전북지방 환경청 (김○○)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4. 대안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대안을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 - 해당 계획에 적용할 대안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설정 사유를 정성적·개괄적으로 제시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를 포함하여 제시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평가 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 범위·방법 ○ 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분석 데이터 등 현황자료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횟수 범위 등을 설정하고, 현지조사 외에 지척실정에 밝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문헌자료 상의 측정일자 등을 상세히 표기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전북지방 환경청 (김○○)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3-72호(‘23.4.13.)]」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별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table><tr><th colspan="2">구분(평가항목)</th><th>의견</th></tr><tr><td rowspan="2">계획의 적정성</td><td>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td><td>•상위 계획(도로망 종합계획 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여부 검토·제시</td></tr><tr><td>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td><td>•도로 신설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제시</td></tr><tr><td rowspan="4">입지의 타당성</td><td rowspan="4">자연 환경의 보전</td><td>생물다양성·서 식지보전 (동·식물상)</td><td>•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횡수 등은 총 공사구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 되는지역으로 설정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활동(출현)시기에 실시한 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td></tr><tr><td>지형·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td><td>•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지형훼손(경관 훼손, 생태축 단절, 절·성토고 발생 등) 및 주변 생태계 등에 미치는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제시</td></tr><tr><td>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td><td>•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및 부조화, 경관 차폐 등의 측면에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차폐식재 계획 등)을 수립 - 절·성토 사면 등에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등) 설치시 해당 구조물로 인한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td></tr><tr><td>수환경의 보전 (수질)</td><td>•사업노선 하류 수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제시</td></tr><tr><td rowspan="3">입지의 타당성</td><td rowspan="2">생활 환경의 안전성</td><td>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td><td>•대기질은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선정 •공사시·운영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을면밀히 수행하고, 현장에 적합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수립·제시</td></tr><tr><td>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td><td>•사업시행 시 발생되는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고, 보관 및 처리대책 수립·제시 - 편입되는 지장물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및 세부 처리계획 제시</td></tr><tr><td>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td><td>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주거)</td><td>•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를 면밀히 예측하고, 친 환경적 토지이용 방안 강구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임석마을, 신평마을, 팔덕면 소재지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생활권 단절대책, 이주비용 등)을 마련</td></tr></table>	구분(평가항목)		의견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계획(도로망 종합계획 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여부 검토·제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도로 신설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제시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 식지보전 (동·식물상)	•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횡수 등은 총 공사구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 되는지역으로 설정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활동(출현)시기에 실시한 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지형·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지형훼손(경관 훼손, 생태축 단절, 절·성토고 발생 등) 및 주변 생태계 등에 미치는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제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및 부조화, 경관 차폐 등의 측면에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차폐식재 계획 등)을 수립 - 절·성토 사면 등에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등) 설치시 해당 구조물로 인한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수환경의 보전 (수질)	•사업노선 하류 수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제시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대기질은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선정 •공사시·운영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을면밀히 수행하고, 현장에 적합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수립·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고, 보관 및 처리대책 수립·제시 - 편입되는 지장물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및 세부 처리계획 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를 면밀히 예측하고, 친 환경적 토지이용 방안 강구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임석마을, 신평마을, 팔덕면 소재지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생활권 단절대책, 이주비용 등)을 마련
		구분(평가항목)		의견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계획(도로망 종합계획 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여부 검토·제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도로 신설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제시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 식지보전 (동·식물상)	•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횡수 등은 총 공사구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 되는지역으로 설정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활동(출현)시기에 실시한 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지형·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지형훼손(경관 훼손, 생태축 단절, 절·성토고 발생 등) 및 주변 생태계 등에 미치는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제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및 부조화, 경관 차폐 등의 측면에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차폐식재 계획 등)을 수립 - 절·성토 사면 등에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등) 설치시 해당 구조물로 인한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수환경의 보전 (수질)	•사업노선 하류 수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제시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대기질은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선정 •공사시·운영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을면밀히 수행하고, 현장에 적합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수립·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고, 보관 및 처리대책 수립·제시 - 편입되는 지장물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및 세부 처리계획 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를 면밀히 예측하고, 친 환경적 토지이용 방안 강구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임석마을, 신평마을, 팔덕면 소재지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생활권 단절대책, 이주비용 등)을 마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 작성 - 다양한 홍보매체(읍, 면, 동사무소 게시한, 현수막 등) 활용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의견수렴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7.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한국환경 연구원 (양 ○)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환경매체 및 영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 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대안노선별로 자연환경(절·성토 발생,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등) 및 생활환경(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및 대기질 영향, 경관 영향, 생활권 단절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저감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또한 해당 내용을 평가서에 상세히 수록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협의회,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방법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영향예측결과 및 저감계획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명확히 전달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기타 ○ 의견없음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순창군청 (오○○)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공사구간에 팔덕면 입석마을, 신평마을, 신기마을, 사정마을, 구항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중에 발생하는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전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 소음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 ○ 의견없음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팔덕면 주민대표 (강○○)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의견없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구상안 ○ 적정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할 것
		6. 기타 ○ 보상 등 계획하면 잘 알려주기 바람

위 원	평가구분	심의의견
시민단체 (서○○)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의견없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는 적당하다고 생각함
		2. 토지이용구상안 ○ 강천산 군립공원에 피해 없도록 노선을 정하기 바람
		3. 대안 ○ 각 대안의 장단점을 잘 검토하여 하기 바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목 설정은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변 관심도가 높으니 주민설명회 등 잘 알리고 하기 바람
		6. 기타 ○ 공사 소음과 저수지 피해 없도록 하기 바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1/1)

□ 민간전문가((주)바론)(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2)

□ 안 건 명: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2호/ 2023.6.15.(목)-6.30.(금)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결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본 평가준비서의 내용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상지역 설정 범위는 적정하게 설정되었음
	2. 도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 없음
	6. 기타 사항
	강진산 군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구간 인근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일

심의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2)

□ 안 건 명: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2호/ 2023.6.15.(목)-6.30.(금)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결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일체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지이용 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제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일체의 특성 및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적정히 설정함.
	2. 도지이용 구상안
	인근 주민 환경피해 등 생태계 훼손 최소화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함.
	3. 대안
	○ 일일도로를 통행 차량을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예: 생물의 서식 및 이동활동)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에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이 자연공원인 강진산 군립공원을 연결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가이 강진산의 대상으로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등 생태계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고 환경중충군경으로 구분하여 경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의 2차로 구간 중 오르막차로 설치 검토구간은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조사된 바,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환경영향(음향, 지진·지진 동)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하천(정신 등) 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공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사항
	제4항 지역개발에서 환경관리 지구지역 지정 세부사항에 사업의 역과와 연계하여 제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일

심의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협의기관(전북지방환경청)(1/3)

□ 협의기관(전북지방환경청)(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공주군 구림면 월정리 연결도로(지방도 729호선-국도2호선 연계)를 신설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을 바탕으로 개발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주변 환경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저감방안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평가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목표·방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측정·분석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분야·항목별 세부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은 강진산 군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무이산)에 연결하여 지나가는 노선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	
○ 지역환경의 보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부지 주변(강진산 및 고추장마을 등)에서 계획 또는 공사-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3. 도지이용 구상안	
○ 경제·교통수요를 고려한 도지이용 구상안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강진산군립공원 경관 등)을 반영하여야 함	
4. 대안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대안을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	
○ 대안 계획에 적용할 대안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안)을 설정하고, 그 선정 사유를 정성적·계량적으로 제시하고, 경제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제성을 포함하여 제시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평가 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 범위·방법	
○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분석 데이터 등 현황자료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횟수 범위 등을 설정하고, 현지조사 외에 지역일정에 따른 지역민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문헌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 상의 측정일자 등을 상세히 표기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23.4.13))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고, 다음의 항목별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야 함	
계획의 적정성	구분(평가항목)
	의견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계획(도농복합계획 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적합성 여부 검토·제시
계획의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도로 신설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군·읍·면 단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제시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토지·물)
	○ 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필수 등은 공·사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접·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입지의 타당성	지형·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현지조사는 동·식물의 활상(출현·활동)에 실시한 후 영향여부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입지의 타당성	주변 자연경관·문화유산의 보전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지형·토지·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제시
입지의 타당성	수질·생태의 보전 (수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수질·생태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제시

- 1 -

- 2 -

□ 주민대표(팔덕면)(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2)

- 안 건 명: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2호/ 2023.6.15.(목)-6.30.(금)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O'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의견	이 건 없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적정함
3. 대안	이 건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이 건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등에게 각 단계별 출결
6. 기타 사항	보충 등 계획하면 각 단계별 출결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시민단체(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2)

- 안 건 명: '순창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3-2호/ 2023.6.15.(목)-6.30.(금)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O'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의견	이 건 있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2. 토지이용 구상안	환경영향과 관계 있는 지역
3. 대안	각 단계별 출결을 고려하여 계획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환경영향과 관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등에게 각 단계별 출결
6. 기타 사항	환경영향과 관계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